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3
----------	-----

제출년월일 : 2002. 1. 26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설치 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일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감면조례의 설치 목적 내용을 법령기능의 보완과 과세의 형평을 기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함.(안 제1조)
- 나. 음성나환자집단촌의 명칭을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한센정착농원으로 변경함.(안 제5조)
- 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징감방법을 과세표준액으로 명확히 정함.(안 제10조)
- 라.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농어촌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의 삭제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달라진 관련 법률 명칭을 정비함.(안 제13조제1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파주시시세의”를 “따라 파주시시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중 제목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의”를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세 무 과 ☎ 940-4231
입 안 자	세 무 과 장	석 명 범
	시 세 담 당	이 용 석
	담 당 자	정 제 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파주시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파라 파주시시세의----- ----- -----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의 주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 ----- ----- -----.
제10조(문화제에 대한 감면) ①생략 ②문화제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제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징감한다.	제10조(문화제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②·③ (생략)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